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9-8 호
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 기준에서 「최저보험료」 기준으로 개편 시행(2018.7.1.)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→ 월 보험료 부과금액

「국민건강보험료법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(안 제3조)

나. 근거법령 보강

‘한부모가족’ → ‘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한부모가족’(안 제3조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8. 12. 6. ~ 2018. 12. 26. (의견제출 없음)

2)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【법무팀 의견】

- ▶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
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”을 “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한부모가족”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<u>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</u>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한부모가족</u> 세대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월 보험료 <u>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-----.</u>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한부모가족지원법</u>」에 따른 <u>한부모가족</u> 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지원시기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<u>당해 계좌로</u> 일괄 지급한다.</p>	<p>제6조(지원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해당 -----.</p>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
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김소희
연락처	02-3153-6456